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6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6,059,160원, 농어촌특별세 3,183,700원, 지방교육세 1,376,95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혼인하여 자녀 2명(이하 원고, B, 자녀 2명을 통틀어 '원고의 가족'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2020. 7. 31. '○○시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17.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가족은 2020. 11. 30. F(원고의 동생) 소유의 '○○시 G아파트, H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0. 12.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가족은 2020. 12. 3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12. 29.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17,933,000원, 지방교육세 1,793,300원, 농어촌특별세 1,580,000원 합계 21,306,3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위 F가 '○○시 G아파트, H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안내에 따라, 2021. 1. 29. 그 중과세율(8%)을 전제로 한 세액과 기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취득세 46,059,160원, 농어촌특별세 3,183,700원, 지방교육세 1,376,950원 합계 50,619,810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4. 9. 위 추가 납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는 2021. 4.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1. 4.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혼인하여 자녀까지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F 소유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F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와 F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은 '1세대'의 판단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만 들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나 세대 분리를 위한 취득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원고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F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그들을 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말하는 1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이하 '피고의 해석'이라 한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하 '주택 취득자'라고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다)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하 '분리 전 가족'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 취득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전입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위 주택 취득자와 분리 전 가족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해석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거주 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과 임시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위 주택의 취득 즉시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 동기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는 것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반면, 피고의 해석에 의하면 위 입법목적 달성을 넘어서까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결과가 된다.

② 피고의 해석에 의하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 이사하기 전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1], 이사 후에 위 전입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중과세

1) 만약 원고가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취득일 하루 전에 실제로는 살지 않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 두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취득→이사→전입신고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사에 앞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③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여, 이사 이후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택의 취득 이후 위 상당한 기간 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과 동시에 주민등록법상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④ 2021.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로 제4호를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는 기존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한 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배우자 B, 자녀 2명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동생 F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2020. 12. 29. 취득한 이틀 후인 2020. 12. 31. F와 세대를 분리하여 위 취득한 주택으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원고와 F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끝.